

구미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번호	
------	--

제출일자 2006. 10. .

제 출 자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안 제18조 운영위원회의 정기회를 「매년 3월말」에 개최토록 규정하였으나
 - 도서관 운영 및 발전 기본 방침에 관한 사항, 도서관자료의 구성 방침 및 독서운동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,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 주요 심의안건에 대해서는 연말이전에 신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하여 업무를 추진해야함으로 정기회의 일정 수정
- 기 위촉 운영되고 있는 운영위원회 위원들의 잔여임기 보장은 물론 업무의 연속성을 위하여 부칙에 경과조치 신설

2. 수정 주요내용

- 안 제18조제2항의 정기회 개최를 「매년 3월말」을 「매년 12월」로 수정
- 부칙 「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」를 부칙 제1항(시행일)로 하고, 제2항(경과조치)는 「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」는 단서규정 신설

3. 참고사항

- 「도서관 및 독서진흥법」 제24조

구미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구미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18조제2항 중 “매년 3월말”을 “매년 12월”로 한다

안 부칙을 부칙 제1항(시행일)로 하고,

안 부칙에 제2항(경과조치)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
설치된 것으로 본다

수정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u>(신 설)</u>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	제18조(운영위원회 회의) ①운영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. ②정기회는 <u>매년 3월말</u>에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.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<u>(신 설)</u>	제18조(운영위원회 회의) ①(개정안과 같음) <u>②..... 매년 12월.....</u> <u>③(개정안과 같음)</u> 부 칙 <u>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u> <u>②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이전에 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.</u>

구미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구미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”를 “구미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조의2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“도서관자료”(이하 “자료”라 한다)라 함은 「도서관 및 독서진흥법」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말한다.
2. “열람자료”라 함은 열람자가 도서관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도서 및 비 도서를 말한다.
3. “대출자료”라 함은 이용자가 도서관 밖으로 대출 열람할 수 있는 도서 및 비 도서를 말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변경하고자”를 “변경·취소하고자”로 하고,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② 제1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강당사용 허가신청서를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, 변경·취소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3일 이전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사용변경·취소 신청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.

제2조제4항 단서 중 “관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”를 “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일 경우”로 한다.

제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동조 제3호 및 제5호를 삭제한다.

1. 소음으로 인해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

제4조제1항제2호중 “하절기(03월~10월)는 09:00부터 18:00까지, 동절기(11월~02월)는 09:00부터 17:00”을 “09:00부터 18:00”으로 한다.

제5조의 제목 중 “감면 및 특례”를 “면제”로 하고, 동조 제1항 중 “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”을 “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는 제4조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면제”로 하고, 동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삭제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수령과 동시에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는 사용개시 전까지”를 “수령 후 사용개시 1일전까지 사용료를”로 하고,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②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할 수 있다.

1. 천재지변,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도서관 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 : 사용료의 100%
2.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예약일 5일전에 그 사용을 취소할 때 : 사용료의 100%
3.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예약일 3일전에 그 사용을 취소할 때 : 사용료의 80%
4.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예약일 1일전에 그 사용을 취소할 때 : 사용료의 50%
5.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예약 당일 그 사용을 취소할 때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

제7조제6호를 삭제한다.

제11조제2호중 “전염병의 우려가”를 “전염병 질환이”로 하고 동조제4호를 삭제한다.

제12조제1항 중 “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”를 “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”로 하고, 동조제2항 중 “손해배상을 하여야”를 “현품이나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이를 변상하여야”로 한다.

제16조를 제20조로 하고, 제16조 내지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6조(운영위원회 구성) ①관장은 「도서관 및 독서진흥법」 제24조 제2항 규정에 의거 구미시립도서관운영위원회(이하 “운영위원회”)를 운영한다.

②운영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이상 15인 이하로 구성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, 간사는 사서담당 주사가 된다.

③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운영위원회를 대표한다.

④위원은 당해 도서관의 장과 당해 도서관의 봉사대상 구역안의 문화 계, 교육계 전문인사 및 이용자중에서 당해 도서관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.

⑤위원의 임기는 위촉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

제17조(운영위원회 직무)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도서관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
2. 도서관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

3. 도서관자료의 구성 방침에 관한 사항
4. 독서운동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5.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
6. 다른 도서관·문고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
7. 기타 도서관 후원에 관한 사항

제18조(운영위원회 회의) ①운영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.

②정기회는 **매년 12월**에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 할 수 있다.

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.

제19조(실비보상) 운영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「구미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4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①(**시행일**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**경과조치**) 이 조례 시행이전에 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